

취업·창업지원센터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취업·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 및 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취업통계조사 및 지표관리 업무
2. 취업교과목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·프로그램 관련 업무
3. 취업 활성화 및 취업지원 활동 관련 업무
4. 기타 학생역량강화와 관련된 업무
5. 재학생 창업지원 및 창업동아리 지원
6. 창업교육과정 및 산학협동 지원체제 구축
7. 기타 센터 운영 관련 업무

제3조(조직) ①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.<개정 2021.8.27.>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직원 및 연구원 등) ①직원은 센터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, 직원의 임명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.

②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취업창업지원위원회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업·창업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부 칙(제정 2015. 5. 2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취업창업지원센터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21. 8. 2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